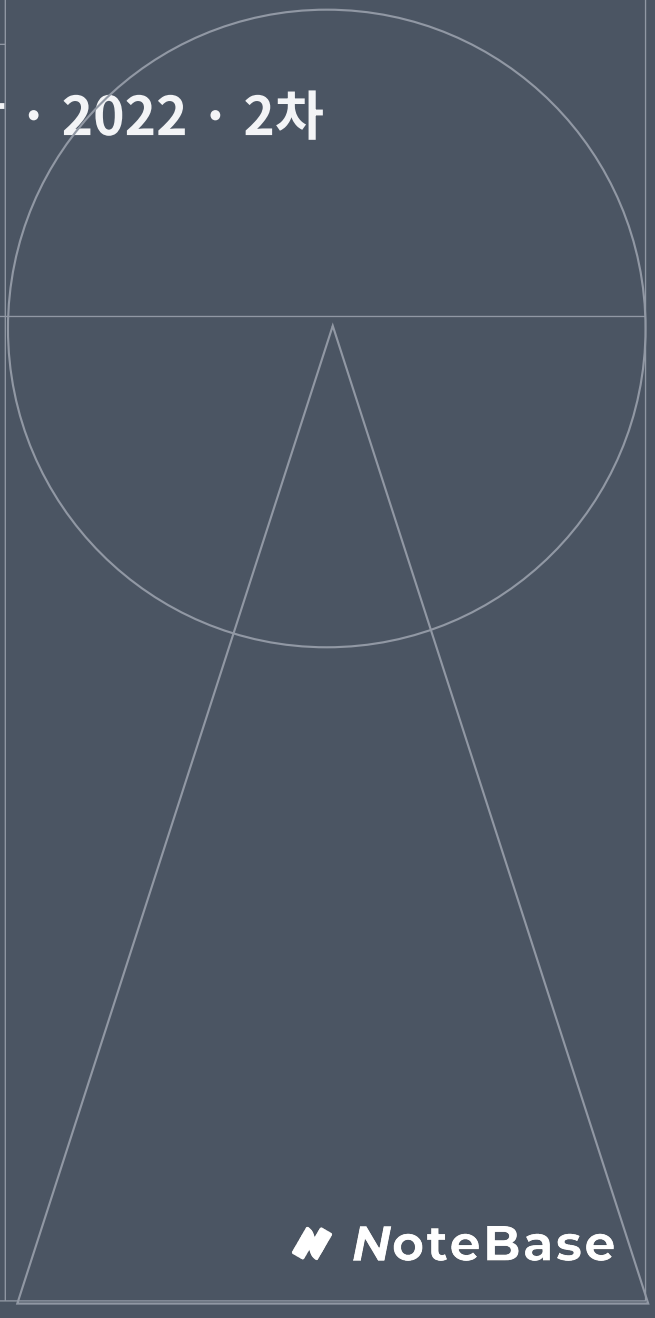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국가직/7급 · 무역학 · 2022 · 2차



NoteBas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국가직/7급 · 무역학 · 2022 · 2차

공무원/국가직/7급 · 무역학 · 2022 · 2차

문 1.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CISG)」상 매수인의 계약위반에 따른 매도인의 권리구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매도인은 계약이행청구권과 동시에 계약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② 매도인은 매수인의 의무이행을 위한 상당한 기간의 추가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

③ 매도인은 손해배상 이외의 구제권 행사로 인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④ 매도인이 스스로 물품명세를 확정하는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이에 관한 세부사항의 통지 없이 스스로 물품명세를 확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물품명세는 구속력을 갖는다.

정답 4번

쟁점

이 문제는 CISG상 매수인의 계약위반에 대한 매도인의 구제수단이 서로 병존할 수 있는지, 그리고 매도인의 물품명세 확정이 어떤 요건 아래 구속력을 갖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용어 풀이

추가기간은 채무자인 매수인에게 이행 기회를 한 번 더 주기 위하여 매도인이 정하는 상당한 기간이다.
물품명세 확정은 매수인이 정해야 할 규격·치수 등 세부사항을 정하지 않을 때 매도인이 대신 그 내용을 특정하는 것이다.

핵심 구분

CISG 제62조상 이행청구는 그와 양립할 수 없는 구제수단과 동시에 갈 수 없다. 따라서 계약 존속을 전제로 하는 이행청구와 계약 소멸을 전제로 하는 계약해제는 병존하지 않는다.
반면 CISG 제61조 제2항상 손해배상청구권은 다른 구제권을 행사하더라도 소멸하지 않는다.
또한 CISG 제65조 제2항상 매도인이 스스로 물품명세를 정한 경우에는 그 세부사항을 매수인에게 통지하고, 매수인이 다른 명세를 제시할 수 있는 상당한 기간을 정한 뒤에야 그 명세가 구속력을 가질 수 있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1번 O: CISG 제62조는 매도인이 대금지급, 인도수령, 그 밖의 의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그 청구와 양립할 수 없는 구제수단을 이미 택한 경우에는 허용하지 않는다. 계약해제는 계약을 끝내는 구제수단이므로 계약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이행청구와 동시에 행사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다.
2번 O: CISG 제63조 제1항에 따라 매도인은 매수인의 의무이행을 위하여 상당한 기간의 추가기간을 정할 수 있다. 이른바 Nachfrist 부여에 관한 설명으로서 맞는 문장이다.
3번 O: CISG 제61조 제2항은 매도인이 다른 구제수단을 행사하더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잃지 않는다고 정한다. 따라서 손해배상 이외의 구제권 행사 때문에 손해배상청구권이 박탈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4번 X: CISG 제65조 제2항에 따르면 매도인이 스스로 물품명세를 확정한 경우에는 그 세부사항을 매수인에게 통지하고, 매수인이 다른 명세를 제시할 수 있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틀린 표현은 '세부사항의 통지 없이'이다. 올바른 표현은 '세부사항을 통지하고 상당한 기간을 정한 후, 그 기간 내 매수인이 달리 정하지 않으면 매도인이 정한 물품명세가 구속력을 갖는다'이다.

오답 포인트

이 문제를 틀렸다면 구제수단의 병존 가능성과 물품명세 확정의 절차를 섞어 보았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4번은 '매도인이 대신 정할 수 있다'는 전반부만 기억하면 맞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통지와 반론기회 부여가 빠지면 구속력이 바로 생기지 않는다는 점이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CISG 구제수단 문제는 먼저 각 권리가 병존 가능한지부터 본다. 이행청구와 해제처럼 서로 전제가 충돌하면 병존하지 않고, 손해배상은 다른 구제와 함께 갈 수 있다. 일방이 대신 정하는 명세 문제는 통지와 상당기간 부여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CISG 매도인 구제는 이행청구와 해제는 충돌하고, 손해배상은 병존하며, 물품명세 확정은 통지 후에야 구속력이 생긴다.

NoteBase

문 2. 국제통화제도의 변천 과정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① 금본위제도→킹스턴 체제→스미소니언 체제→브레튼우즈 체제

② 금본위제도→스미소니언 체제→브레튼우즈 체제→킹스턴 체제

③ 금본위제도→브레튼우즈 체제→스미소니언 체제→킹스턴 체제

④ 금본위제도→스미소니언 체제→킹스턴 체제→브레튼우즈 체제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국제통화제도의 시대별 변천 순서를 정확히 배열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올바른 순서

1. 금본위제도 - 통화가 금과 연결되어 국제결제가 금을 기준으로 이루어진 단계이다.
2. 브레튼우즈 체제 - 달러를 금에 태환하고 각국 통화를 달러에 고정한 금환본위의 고정환율 체제이다.
3. 스미소니언 체제 - 브레튼우즈 체제의 경직성을 완화하려고 환율 변동폭을 넓힌 과도기 체제이다.
4. 킹스턴 체제 - 변동환율제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금의 통화적 역할을 축소한 체제이다.

왜 이 순서: 브레튼우즈 체제가 먼저 형성되고 그 붕괴 과정에서 스미소니언 체제가 보완책으로 등장했으며, 그 이후 킹스턴 체제가 변동환율제를 제도화하였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틀린 부분: 금본위제도 다음에 킹스턴 체제를 둔 배열이 틀리다.
이유: 킹스턴 체제는 네 체제 중 가장 나중 단계이며 금본위제도 직후에는 브레튼우즈 체제가 온다.
올바르게는: 금본위제도 → 브레튼우즈 체제 → 스미소니언 체제 → 킹스턴 체제이다.

② X
틀린 부분: 스미소니언 체제를 브레튼우즈 체제보다 먼저 둔 배열이 틀리다.
이유: 스미소니언 체제는 브레튼우즈 체제의 균열 이후에 나온 수정 체제이므로 선행할 수 없다.
올바르게는: 금본위제도 → 브레튼우즈 체제 → 스미소니언 체제 → 킹스턴 체제이다.

③ O
이유: 금본위제도 이후 브레튼우즈 체제, 그 다음 스미소니언 체제, 마지막이 킹스턴 체제로 이어지는 실제 변천 순서와 일치한다.

④ X
틀린 부분: 금본위제도 다음에 스미소니언 체제를 둔 배열이 틀리다.
이유: 스미소니언 체제는 브레튼우즈 체제의 수정판이므로 브레튼우즈 체제보다 앞설 수 없다.
올바르게는: 금본위제도 → 브레튼우즈 체제 → 스미소니언 체제 → 킹스턴 체제이다.

오답 포인트

브레튼우즈 체제와 스미소니언 체제를 모두 고정환율제 계열로만 기억하면 두 체제의 선후가 흐려져 ②와 ④에 끌리기 쉽다. 스미소니언은 브레튼우즈의 수정 단계이고 킹스턴은 변동환율제를 공식화한 최종 단계라는 점이 핵심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국제통화제도 순서 문제는 금 태환 방식과 환율제도의 변화 방향으로 판단한다. 금본위제도에서 출발해 브레튼우즈의 금환본위 고정환율, 스미소니언의 변동폭 확대, 킹스턴의 변동환율 공식화 순으로 정리하면 판단할 수 있다.

암기 포인트

금-브-스-킹은 국제통화제도 변천의 기본 순서이다.

NoteBase

문 3. 문화의 차이를 설명하는 이론 중 홉스테드(Hofstede)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남성주의적인 성향이 강한 문화에서는 경쟁과 성취에 더 높은 가치를 두고, 여성주의적인 성향이 강한 문화에서는 복지와 화목에 더 높은 가치를 두는 경향이 있다.

② 불확실성 회피성이 강한 문화에서는 법률이나 제도를 마련하여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거하고자 한다.

③ 개인주의적인 사회에서는 개인들 간의 연계가 느슨하며 개인의 성취와 자유가 높게 평가된다.

④ 권력간격이 작은 문화에서는 권력과 부의 불평등성이 점차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권력간격이 큰 문화에서는 사람들이 이러한 격차를 가능하면 줄이려고 노력하는 성향을 보인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호프스테드 문화차원의 핵심 의미, 특히 남성성-여성성, 불확실성 회피, 개인주의, 권력간격의 방향을 정확히 구분하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남성성-여성성은 경쟁과 성취를 중시하는가, 복지와 화목을 중시하는가를 가르는 차원이다.
불확실성 회피는 미래의 모호함과 불확실성을 얼마나 불편하게 느끼며 이를 규칙과 제도로 줄이려 하는가를 뜻한다.
개인주의는 개인 간 유대가 느슨하고 개인의 자율성과 성취를 중시하는 문화 성향이다.
권력간격은 사회의 권력 불평등을 얼마나 당연하게 수용하는가를 뜻하며, 작을수록 불평등 축소를 지향하고 클수록 위계와 격차 수용이 강하다.

선지별 해설

① O: 남성주의적 성향이 강한 문화는 경쟁과 성취를 중시하고, 여성주의적 성향이 강한 문화는 복지와 화목을 더 중시한다는 설명이므로 옳다.
② O: 불확실성 회피 성향이 강한 문화는 미래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법률, 규칙, 제도, 절차를 촘촘히 마련하려는 경향이 있으므로 옳다.
③ O: 개인주의 사회는 개인들 간의 연계가 비교적 느슨하고 개인의 자유, 자율성, 성취가 높게 평가되므로 옳다.
④ X: 틀린 부분은 권력간격이 작을 때 불평등이 확대되고, 권력간격이 클 때 격차를 줄이려 한다고 서술한 점이다. 실제로는 권력간격이 작은 문화일수록 권력과 부의 불평등을 줄이려는 성향이 강하고, 권력간격이 큰 문화일수록 위계와 격차를 상대적으로 당연하게 수용하는 경향이 있다.

오답 포인트

④는 권력간격의 방향을 정반대로 뒤집어 놓은 선지이다. 수험생은 권력간격이 크면 불평등을 줄이려 하고 작으면 불평등이 확대된다고 잘못 연결하기 쉬우나, 실제 개념은 그 반대이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호프스테드 문항은 각 차원이 무엇을 더 수용하거나 더 중시하는지 방향부터 확인하면 된다. 권력간격은 불평등 수용 정도, 개인주의는 개인 자율성, 불확실성 회피는 규칙을 통한 모호성 축소, 남성성은 경쟁과 성취 중시로 연결하면 판단이 안정된다.

암기 포인트

권력간격이 작다=격차를 줄이려 한다, 권력간격이 크다=위계와 불평등을 더 수용한다.

NoteBase

문 4. (가), (나)에 들어갈 외환거래의 형태에 대한 용어를 바르게 짝 지은 것은?

(가) 거래에서는 계약일로부터 통상 2영업일 경과 후 특정일에 약정한 환율로 외환의 인수 · 인도 및 결제가 이루어진다.
(나) 거래에서는 동일한 거래 상대방 간에 현물환-선물환, 만기가 서로 다른 선물환-선물환 또는 현물환-현물환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동시에 매매가 이루어진다.

① (가): Forward Exchange, (나): Options
② (가): Spot Exchange, (나): Swap
③ (가): Forward Exchange, (나): Swap
④ (가): Spot Exchange, (나): Options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결제 시점과 거래 구조를 기준으로 현물환, 선물환, 스왑, 옵션을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현물환은 계약 후 통상 2영업일 이내에 외환을 결제하는 거래이다.
선물환은 계약일로부터 통상 2영업일이 지난 특정 미래일에 약정 환율로 결제하는 거래이다.
스왑은 동일 상대방과 서로 반대 방향의 두 외환거래를 동시에 묶는 거래이다.
옵션은 미래에 일정 환율로 외화를 사거나 팔 수 있는 권리를 거래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스왑과 구별된다.

선지별 해설

1번: X. (가)는 계약일로부터 통상 2영업일이 지난 특정일에 약정 환율로 결제하므로 Forward Exchange가 맞다. 틀린 부분은 (나)를 Options로 본 점이다. 옵션은 외화를 사고팔 수 있는 권리를 거래하는 것이고, 제시문처럼 현물환-선물환 또는 만기가 다른 선물환을 반대 방향으로 동시에 매매하는 거래는 Swap이다.
2번: X. (나)를 Swap으로 본 점은 맞다. 틀린 부분은 (가)를 Spot Exchange로 본 점이다. Spot Exchange는 통상 계약 후 2영업일 이내 결제이고, 제시문처럼 2영업일 경과 후 특정 미래일에 결제하면 Forward Exchange이다.
3번: O. (가)는 결제일이 미래의 특정일로 정해진 선물환거래이고, (나)는 동일 상대방과 반대 방향의 두 외환거래를 동시에 체결하는 스왑거래이므로 둘 다 맞다.
4번: X. (가)를 Spot Exchange, (나)를 Options로 본 부분이 모두 틀리다. 올바르게는 (가)는 Forward Exchange이고, (나)는 Swap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현물환과 선물환은 결제 시점이, 스왑과 옵션은 거래 구조가 핵심 구별점이다. 특히 '통상 2영업일 경과 후 특정일'이라는 표현을 놓치면 (가)를 현물환으로 오인하기 쉽고, '서로 반대 방향으로 동시에 매매'를 권리거래인 옵션으로 착각하면 (나)를 틀리게 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결제일이 계약 후 2영업일 이내인지, 그 이후의 특정 미래일인지로 현물환과 선물환을 가른다. 그다음 동일 상대방과 반대 방향의 거래를 동시에 묶었는지, 아니면 일방에게 선택권만 주는지로 스왑과 옵션을 구별한다.

암기 포인트

현물환은 2영업일 이내 결제, 선물환은 미래 특정일 결제, 스왑은 반대거래 결합, 옵션은 선택권 거래이다.

NoteBase

문 5. Incoterms® 2020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CPT, CIP, CFR, CIF조건이 사용되는 경우 매도인은 물품이 목적지에 도착한 때에 인도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된다.

② 매도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수입통관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DDP조건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③ FOB조건에서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위험은 물품이 본선에 적재된 때 이전되며, 매수인은 그러한 시점 이후의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

④ CIF조건에서 매도인은 최소담보조건으로 부보하도록 요구되므로 매수인은 보다 넓은 보험의 담보를 원한다면, 매도인과 명시적으로 그렇게 합의하거나 아니면 자신의 비용부담으로 추가보험에 부보하여야 한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Incoterms 2020에서 비용부담의 종점과 인도시점 및 위험이전시점을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CPT·CIP·CFR·CIF는 매도인이 운송계약이나 운임을 부담하더라도 인도는 선적지나 최초 운송인 인도 시점에 완료되는 조건이다.
DDP는 매도인이 수입통관까지 책임지는 조건이므로 매도인이 수입통관을 이행할 수 없으면 부적절하다.
FOB는 본선적재 시점에 위험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는 선적조건이고, CIF는 매도인이 최소담보조건의 보험을 부보하는 조건이다.

선지별 해설

1번: X. 틀린 부분은 "물품이 목적지에 도착한 때에 인도의무를 이행"한다는 표현이다. CPT, CIP, CFR, CIF는 목적지까지의 운송비용을 매도인이 부담할 수는 있지만 인도 자체는 목적지 도착 시점이 아니라 선적지에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거나 본선에 적재한 시점에 완료된다. 올바르게는 "매도인은 정해진 선적지점에서 운송인에게 인도하거나 본선에 적재한 때 인도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된다"이다.
2번: O. DDP는 매도인이 수입국에서의 수입통관과 관세 납부까지 부담하는 조건이므로 매도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수입통관을 처리할 수 없으면 사용을 피하는 것이 타당하다.
3번: O. FOB에서는 물품이 본선에 적재된 때 위험이 매수인에게 이전된다. 따라서 그 시점 이후의 운임, 보험료 등 후속 비용은 원칙적으로 매수인이 부담한다.
4번: O. CIF에서 매도인은 최소담보조건으로 보험을 부보하면 되므로, 매수인이 더 넓은 담보를 원하면 매도인과 명시적으로 합의하거나 자기 비용으로 추가보험을 부보하여야 한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C조건과 CIF를 보면 목적지 명칭이 붙어 있어 도착조건처럼 보이지만, 이는 비용부담의 범위를 표시할 뿐 인도시점이나 위험이전시점을 뜻하지 않는다. 출제자는 "목적지 도착"이라는 문구로 비용부담과 인도를 혼동하게 만든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Incoterms 문제는 먼저 누가 운송비를 부담하는지와 별도로 언제 인도가 완료되고 언제 위험이 이전되는지를 분리해서 본다. 목적지 명칭이 들어 있어도 인도 완료가 도착 시점인지, 선적지 인도 시점인지를 먼저 확인하면 정답을 빠르게 고를 수 있다.

암기 포인트

운임부담과 인도시점은 별개이다. CPT·CIP·CFR·CIF는 목적지 운임부담 조건일 수 있어도 인도는 출발지 측에서 완료된다.

NoteBase

문 6.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에서 규정하는 서비스 공급형태가 아닌 것은?

① Cross Border Supply
② Consumption Domestic
③ Commercial Presence
④ Presence of Natural Persons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GATS가 규정한 서비스 공급형태 4가지의 명칭을 정확히 구별하는지를 묻는다.

핵심 개념

GATS의 서비스 공급형태는 서비스와 공급자, 소비자 중 누가 국경을 넘는지로 구분된다. Mode 1은 Cross Border Supply, Mode 2는 Consumption abroad, Mode 3은 Commercial Presence, Mode 4는 Presence of Natural Persons이다.

선지별 해설

1번 O: Cross Border Supply는 한 회원국의 영토에서 다른 회원국의 영토로 서비스가 제공되는 형태이므로 GATS의 Mode 1에 해당한다.
2번 X: 틀린 부분은 Domestic이다. GATS의 Mode 2는 자국 내 소비가 아니라 다른 회원국 영토에서 서비스를 소비하는 Consumption abroad이다.
3번 O: Commercial Presence는 외국 서비스공급자가 다른 회원국 영토에 지점이나 자회사를 설치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이므로 Mode 3에 해당한다.
4번 O: Presence of Natural Persons는 자연인이 다른 회원국 영토에 들어가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이므로 GATS의 Mode 4에 해당한다.

오답 포인트

Consumption abroad를 domestic과 혼동하면 틀린다. 이 유형은 소비자가 외국으로 이동해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를 뜻하므로 소비자 이동 여부를 잡아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네 가지 공급형태는 누가 어느 국경을 넘는지로 판단한다. 서비스만 국경을 넘으면 Mode 1, 소비자가 외국에서 이용하면 Mode 2, 기업이 현지에 설립되면 Mode 3, 자연인이 들어가 제공하면 Mode 4이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서비스만 이동 1, 소비자 이동 2, 기업 진출 3, 사람 이동 4이다.

NoteBase

문 7. 공동해손의 성립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동해손 행위로 발생하는 선체·장비·화물 등의 희생손실이나 비용손실은 통상적이어야만 한다.

② 공동해손 행위는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③ 공동해손 행위와 그에 따라 발생하는 손해와 비용은 모두 합리적이어야 한다.

④ 공동해손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위험이 앞으로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우려가 아닌 현재 절박하게 닥쳐오는 위험이 있어야 한다.

정답 1번

쟁점

이 문제는 공동해손의 성립요건 중 특별성, 자발성, 합리성, 공동위험의 현재성을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용어 풀이

공동해손은 공동항해 중 공통의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공동안전을 목적으로 특별한 희생이나 비용을 감수하고, 그 손실을 이해관계자들이 분담하는 제도이다.

핵심 구분

공동해손은 통상손실이 아니라 특별희생 또는 특별비용이어야 한다. 또한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 공동안전을 위한 의도적·자발적 조치여야 하고, 막연한 가능성이 아니라 현재의 공동위험을 피하기 위한 합리적 조치여야 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공동해손의 희생손실이나 비용손실은 통상적이어서는 안 되고, 비상한 공동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특별손실·특별비용이어야 한다.
- 틀린 표현: "통상적이어야 한다."
- 올바른 표현: "특별한 희생손실이나 비용손실이어야 한다."

② O
- 공동해손 행위는 우연히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 공동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목적 아래 자발적·의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 선지는 자발성과 목적성을 설명한 취지에서 옳다.

③ O
- 공동해손으로 인정되려면 행위 자체와 그에 따라 발생한 손해·비용이 모두 합리적이어야 한다.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조치는 공동해손이 되지 않는다.

④ O
- 공동해손은 현재 절박하게 닥쳐온 공동위험을 피하기 위한 조치여야 한다. 장래에 위험이 생길 수도 있다는 막연한 우려만으로는 공동해손이 성립하지 않는다.

오답 포인트

공동해손은 손실을 나누어 부담한다는 결과만 외우고 성립요건을 놓치면 ①의 "통상적"이라는 표현에 속기 쉽다. 핵심은 특별성, 공동안전 목적, 현재의 공동위험, 합리성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공동해손 선지는 먼저 통상손실인지 특별손실인지, 다음으로 공동안전 목적의 자발적 조치인지, 마지막으로 현재의 공동위험과 합리성이 있는지를 순서대로 확인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공동해손은 특별희생 + 자발적 조치 + 공동안전 + 현재의 위험 + 합리성의 결합이다.

NoteBase

문 8. 국제수지(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제수지표는 일정기간 동안 한 국가의 거주자와 비거주자 사이에 발생한 모든 경제적 거래를 기록한 것으로, 복식부기 원리에 따라 작성된다.

② 국제수지표의 경상수지는 상품수지, 서비스수지, 본원소득수지, 이전소득수지로 구성되며, 이전소득수지에는 정부 간에 이루어지는 무상원조 등이 포함된다.

③ 국제수지가 흑자인 경우 외채의 감소, 국내물가의 상승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국제수지가 적자인 경우 외채의 증가, 국가 신용도 하락 등이 발생할 수 있다.

④ 국제수지표의 금융계정은 직접투자, 증권투자, 파생금융상품, 준비자산, 기타투자로 구성되며, 기타투자에는 비생산·비금융 자산거래 등이 포함된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국제수지표의 기본 개념과 경상수지, 자본수지, 금융계정의 구성 항목을 정확히 구분하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국제수지표는 일정 기간 한 나라의 거주자와 비거주자 사이에서 발생한 경제적 거래를 복식부기로 기록한 표이다.
경상수지는 상품수지, 서비스수지, 본원소득수지, 이전소득수지로 이루어진다.
자본수지는 자본이전과 비생산·비금융자산 거래를 기록한다.
금융계정은 직접투자, 증권투자, 파생금융상품, 기타투자, 준비자산 등 금융자산과 부채의 변동을 기록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국제수지표는 거주자와 비거주자 사이의 경제적 거래를 일정 기간 기준으로 기록한 통계이며, 차변과 대변을 함께 적는 복식부기 원리에 따라 작성된다.

② O
경상수지는 상품수지, 서비스수지, 본원소득수지, 이전소득수지로 구성된다. 정부 간 무상원조와 같은 이전거래는 반대급부 없이 이전되는 거래이므로 이전소득수지에 포함된다.

③ O
국제수지 흑자는 대외지급능력을 높여 외채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고, 국내 유동성 증가를 통해 물가상승 압력이 나타날 수도 있다. 반대로 국제수지 적자는 외채 증가와 대외신인도 저하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선지의 방향이 맞다.

④ X
틀린 부분은 '기타투자에는 비생산·비금융자산거래 등이 포함된다'는 표현이다.
비생산·비금융자산 거래는 금융계정이 아니라 자본수지에 포함된다.
기타투자는 대출, 현금 및 예금, 무역신용 등과 같은 기타 금융자산·부채 거래를 뜻한다.

오답 포인트

자본수지와 금융계정의 항목을 뒤섞으면 ④에 쉽게 흔들린다. 특히 '비생산·비금융자산'이라는 표현은 금융상품처럼 보이지 않지만, 시험에서는 이를 기타투자와 연결해 오답으로 만드는 경우가 많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국제수지 항목 문제는 먼저 경상수지, 자본수지, 금융계정의 큰 틀을 나눈 뒤 선지의 거래가 소득·이전거래인지, 자본이전인지, 금융자산 변동인지로 분류하면 된다. 비생산·비금융자산이라는 문구가 나오면 자본수지를 먼저 떠올리는 방식이 유효하다.

암기 포인트

경상은 상품·서비스·본원·이전, 자본은 자본이전·비생산·비금융, 금융은 직접·증권·파생·기타·준비자산으로 정리된다.

NoteBase

문 9. (가), (나)에 들어갈 비관세장벽(NTB)의 종류에 대한 용어를 바르게 짝 지은 것은?

(가)는 수출국이 특정국가에 대해 수출량을 자율적으로 규제하는 것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수입국의 압력이나 요청에 의해 이루어진다. (나)는 정책당국이 특정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기업들의 수출 및 생산활동에 제공하는 금융이나 조세상의 각종 지원수단을 의미한다.

① (가): Orderly Marketing Agreement, (나): Government Procurement

② (가): Voluntary Export Restraint, (나): Subsidy

③ (가): Orderly Marketing Agreement, (나): Subsidy

④ (가): Voluntary Export Restraint, (나): Government Procurement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비관세장벽 가운데 자율수출규제와 보조금, 그리고 비슷하게 보이는 질서 있는 판매협정과 정부조달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자율수출규제(VER)는 수입국의 압력에 따라 수출국이 특정 시장으로의 수출물량을 스스로 제한하는 조치이다. 키워드는 수출제한과 수입국 압력이다.
질서 있는 판매협정(OMA)은 수출국과 수입국이 교역질서를 유지하려고 물량 등을 합의로 조정하는 방식이다. 키워드는 양국 간 협정이다.
보조금은 정부가 특정 산업이나 기업의 생산·수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재정이나 조세 혜택을 제공하는 조치이다. 키워드는 재정·세제 지원이다.
정부조달은 정부가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자국 기업을 우대하는 비관세장벽을 말한다. 키워드는 공공구매 우대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가)가 틀렸다. 제시문은 수입국의 압력에 따라 수출국이 자율적으로 수출을 제한하는 경우이므로 OMA가 아니라 VER이다. 또한 (나)도 틀렸다. 정부조달은 정부 구매에서 자국산을 우대하는 장벽이지, 기업의 수출·생산 활동에 금융이나 세제 지원을 주는 방식이 아니다. 틀린 표현은 Orderly Marketing Agreement, Government Procurement이다. 올바르게는 Voluntary Export Restraint, Subsidy이다.
② O: (가)는 VER가 맞다. 수입국 요청 또는 압력에 따라 수출국이 물량을 자율적으로 제한하는 설명과 정확히 일치한다. (나)도 Subsidy가 맞다. 정책목표를 위해 정부가 금융·조세상 지원수단을 제공하는 설명과 일치한다.
③ X: (나)는 Subsidy로 맞지만 (가)가 틀렸다. (가)는 양국 간 판매질서 협정보다 수출국의 자율적 수출제한을 뜻하므로 OMA가 아니라 VER이다. 틀린 표현은 Orderly Marketing Agreement이다. 올바르게는 Voluntary Export Restraint이다.
④ X: (가)는 VER로 맞지만 (나)가 틀렸다. (나)는 정부의 재정·조세 지원을 뜻하므로 Government Procurement가 아니라 Subsidy이다. 틀린 표현은 Government Procurement이다. 올바르게는 Subsidy이다.

오답 포인트

함정은 (가)에서 자율수출규제와 질서 있는 판매협정을 모두 수출물량 조정 장치처럼 보이게 섞어 놓은 점과, (나)에서 정부가 개입한다는 공통점만으로 보조금과 정부조달을 혼동하게 만든 점이다. 수입국 압력에 따른 수출제한이면 VER이고, 재정·세제 지원이면 Subsidy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수출을 줄이게 만드는 장벽인지, 정부가 돈이나 세금 혜택을 주는 장벽인지를 먼저 가른다. 수입국 압력 아래 수출국이 물량을 스스로 제한하면 VER이고, 기업 활동을 지원하는 재정·세제 수단이면 Subsidy로 판단된다.

암기 포인트

VER는 수출제한, Subsidy는 재정지원, Government Procurement는 공공구매 우대, OMA는 양국 협정이다.

NoteBase

문 10. 신용장통일규칙(UCP 600)상 용어의 해석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신용장상의 양도가능 표시로서 UCP 500에서는 양도가능(transferable)이라는 용어만 인정되었으나, UCP 600에서는 분할가능(divisible), 분절가능(fractionable), 할당가능(assignable) 등의 용어를 사용하면 양도가능으로 간주한다.

② 서류의 발행인을 뜻하는 용어로서 일류의(first class), 저명한(well known), 자격 있는(qualified), 독자적인(independent), 공적인(official)이라는 표현은 수익자를 포함하여 모든 서류 발행인이 사용할 수 있다.

③ 선적기일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신속히(prompt), 즉시(immediately), 가능한 한 빨리(as soon as possible)가 사용되었다면 수출업자는 신용장을 수취한 후 5일 이내에 선적을 완료하여야 한다.

④ 신용장이 통상의 위험(usual risks) 또는 관습적 위험(customary risks)과 같이 불명확한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 보험서류는 부보되지 않은 어떤 위험에 관계없이 수리된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UCP 600의 해석 규정에서 특정 용어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를 정확히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양도가능신용장은 신용장에 "transferable"이라고 명시된 경우만 인정되는 신용장이다.
서류 발행인 표현인 first class, well known, qualified, independent, official 등은 수익자를 제외한 다른 발행인이면 충족되는 표현이다.
prompt, immediately, as soon as possible 같은 표현은 서류에 사용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없는 한 무시된다.
보험조건에서 usual risks, customary risks 같은 불명확한 표현을 쓰면 명시되지 않은 위험이 빠져 있어도 보험서류는 수리될 수 있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틀린 부분은 "divisible, fractionable, assignable 등의 용어를 사용하면 양도가능으로 간주한다"는 표현이다. UCP 600 제38조상 양도가능신용장은 신용장에 "transferable"이라고 특정하여 표시된 경우만 인정된다. divisible, fractionable, assignable은 양도가능을 뜻하는 용어로 보지 않는다.
② X. 틀린 부분은 "수익자를 포함하여"이다. UCP 600 해석 규정상 first class, well known, qualified, independent, official 등의 표현은 수익자를 제외한 어떤 서류 발행인이라도 허용한다. 올바르게는 수익자를 제외한 제3자가 발행하면 된다.
③ X. 틀린 부분은 "신용장을 수취한 후 5일 이내에 선적을 완료하여야 한다"는 표현이다. prompt, immediately, as soon as possible는 원칙적으로 무시되는 표현일 뿐 5일 규칙을 뜻하지 않는다. 5일 전후의 해석은 on or about 같은 날짜 표현에 관한 규정이다.
④ O. 신용장이 usual risks 또는 customary risks처럼 불명확한 보험위험 표현을 쓰면, 보험서류는 담보되지 않은 개별 위험이 있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거절되지 않는다. 이는 UCP 600의 보험조건 해석 규정과 일치한다.

오답 포인트

①은 UCP 500의 옛 표현과 UCP 600의 현재 규정을 뒤섞은 함정이다. ③은 5일 규정을 떠올리게 하지만 그것은 on or about의 날짜 해석이지 prompt나 immediately의 의미가 아니다. ②는 서류 발행인 요건에서 수익자 제외라는 한 단어를 놓치기 쉬운 선지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UCP 600 용어 문제는 먼저 "특정 문구만 인정되는지"와 "불명확하면 무시되는지"를 구분하면 된다. transferable은 명시가 필요하고, prompt류 표현은 무시되며, first class류 표현은 수익자만 제외한다는 기준으로 판단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transferable만 양도가능, prompt류는 무시, first class류는 수익자 제외, usual risks류는 불명확해도 보험서류 수리 가능이다.

NoteBase

문 11. 무역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린더(Linder)의 대표적수요이론은 공산품의 무역패턴을 설명하는 데 적합한 이론으로서 수요구조에 의하여 무역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② 리카도(Ricardo)의 비교우위론은 한 국가가 다른 국가에 비해 두 재화 생산에 모두 절대우위가 있더라도 양국이 서로 다른 재화에 비교우위가 있다면 양국은 무역을 통해 상호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③ 스톨퍼-사뮤얼슨(Stolper-Samuelson)은 헥셔-오린(Heckscher-Ohlin)의 요소부존정리를 검증하여 동일한 결과를 도출하면서 헥셔-오린이 주장한 명제의 타당성을 확인하였다.

④ 크루그만(Krugman)과 란카스터(Lancaster)의 산업 내 무역 이론은 주로 규모의 경제와 제품차별화 개념을 이용하여 동종산업 간에 발생하는 무역을 설명하고 있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대표적 무역이론을 해당 학자와 핵심 명제로 정확히 연결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항이다.

핵심 정리

린더: 대표적 수요이론으로, 소득수준과 수요구조가 비슷한 국가 사이에서 공산품 무역이 활발하다고 본다.
리카도: 비교우위론으로, 절대우위 보유 여부와 무관하게 상대적 기회비용 차이가 있으면 무역이익이 생긴다고 본다.
스톨퍼-사무엘슨: 요소부존 자체를 검증한 이론이 아니라 재화가격 변화가 요소소득에 미치는 효과를 설명하는 정리이다.
크루그먼·란카스터: 규모의 경제와 제품차별화를 바탕으로 동종산업 내 무역을 설명하는 현대 무역이론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린더의 대표적 수요이론은 공산품 무역패턴을 수요구조 유사성으로 설명한다. 생산비보다 수요구조가 무역 발생의 중요한 요인이라는 설명이므로 맞다.

② O
리카도의 비교우위론은 한 나라가 두 재화 모두에서 절대우위를 가져도 상대적 비교우위가 서로 다르면 무역을 통해 상호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본다. 비교우위와 절대우위를 구분한 진술이므로 맞다.

③ X
틀린 부분은 "헥셔-오린의 요소부존정리를 검증하여 동일한 결과를 도출하면서 헥셔-오린이 주장한 명제의 타당성을 확인하였다"는 표현이다. 스톨퍼-사무엘슨 정리는 헥셔-오린 체계 안에서 재화의 상대가격 변화가 생산요소의 실질보수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를 설명한 정리이다. 올바르게는 "스톨퍼-사무엘슨 정리는 재화가격 변화와 요소소득 분배의 관계를 설명한다"고 고쳐야 한다.

④ O
크루그먼과 란카스터의 산업 내 무역이론은 규모의 경제와 제품차별화를 이용해 국가 간 동종산업 무역을 설명한다. 현대무역이론의 핵심 설명과 일치하므로 맞다.

오답 포인트

③은 헥셔-오린 이론군에 속한다는 점 때문에 스톨퍼-사무엘슨 정리를 요소부존정리의 검증 이론처럼 오인하게 만든 함정이다. 헥셔-오린은 요소부존과 무역패턴, 스톨퍼-사무엘슨은 재화가격과 요소보수라는 연결 축이 다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학자 이름이 보이면 먼저 대표 연결어를 떠올리면 된다. 린더는 수요구조, 리카도는 비교우위, 스톨퍼-사무엘슨은 요소소득 분배, 크루그먼·란카스터는 규모의 경제와 제품차별화로 판단하면 선지 정리가 된다.

암기 포인트

린더=수요구조, 리카도=비교우위, 스톨퍼-사무엘슨=재화가격 변화와 요소보수, 크루그먼·란카스터=규모의 경제·제품차별화이다.

NoteBase

문 12. 기업의 국제화 과정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① 국내시장기업→해외지향기업→세계지향기업→현지지향기업

② 국내시장기업→해외지향기업→현지지향기업→세계지향기업

③ 국내시장기업→세계지향기업→해외지향기업→현지지향기업

④ 국내시장기업→현지지향기업→해외지향기업→세계지향기업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기업의 국제화가 국내시장 중심에서 해외 진출, 현지 적응, 세계 통합으로 심화되는 순서를 묻는 문제이다.

올바른 순서

1. 국내시장기업 - 국내시장만을 주된 활동 무대로 삼는 단계이다.
2. 해외지향기업 - 국내 기반을 유지한 채 수출 등으로 해외시장에 진출하는 단계이다.
3. 현지지향기업 - 진출국 시장 특성에 맞추어 현지 자회사나 현지 경영을 강화하는 단계이다.
4. 세계지향기업 - 개별 국가보다 전 세계 시장을 하나의 통합된 시장으로 보고 최적화하는 단계이다.

왜 이 순서: 해외 진출이 먼저 이루어진 뒤에 현지 적응이 가능하고, 여러 현지시장을 운영한 경험이 축적되어야 세계 단위 통합 경영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선지별 해설

1번: X. 해외지향기업 다음에 곧바로 세계지향기업으로 가는 것이 아니다. 현지시장별 적응과 현지 경영이 먼저 나타난 뒤 세계 통합 경영으로 발전한다. 틀린 표현은 '세계지향기업→현지지향기업' 순서이다. 올바르게는 '해외지향기업→현지지향기업→세계지향기업'이다.

2번: O. 국내시장기업에서 출발해 해외시장 진출을 시도하고, 이후 각 현지시장에 맞춘 경영을 거쳐 최종적으로 전 세계를 통합적으로 보는 세계지향기업으로 발전하는 올바른 순서이다.

3번: X. 국내시장기업 다음에 바로 세계지향기업이 될 수는 없다. 해외 진출 경험과 현지시장 운영 단계가 선행되어야 한다. 틀린 표현은 '국내시장기업→세계지향기업'이다. 올바르게는 '국내시장기업→해외지향기업→현지지향기업→세계지향기업'이다.

4번: X. 현지지향기업은 이미 해외시장에 진출한 뒤 각 현지 특성에 맞추는 단계이므로 해외지향기업보다 먼저 올 수 없다. 틀린 표현은 '국내시장기업→현지지향기업→해외지향기업'이다. 올바르게는 '국내시장기업→해외지향기업→현지지향기업→세계지향기업'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현지지향기업과 세계지향기업을 모두 '해외활동 단계'로만 묶어 보면 선후관계를 놓치기 쉽다. 현지지향은 국가별 적응이 중심이고, 세계지향은 국가 단위를 넘는 통합 최적화가 중심이라는 점이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국제화 순서 문제는 국내 중심 단계인지, 해외 진출 단계인지, 현지 적응 단계인지, 세계 통합 단계인지를 차례로 구분하면 풀린다. 특히 '현지 적응'이 '세계 통합'보다 앞선다는 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국내 진출 전에는 현지가 없고, 현지 적응 뒤에 세계 통합이 온다는 흐름으로 기억한다.

NoteBase

문 13. 국제 라이센싱(licensing)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라이센서는 기술을 해외로 이전시킴으로써 추가적 이윤 확보를 기대할 수 있다.

② 계약의 핵심은 무형 자산의 이전이므로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영관리계약과는 성격이 다르다.

③ 라이센시가 기술에 대한 지식과 노하우를 습득하여 라이센서의 경쟁자로 등장할 수 있다.

④ 현지 합작선과의 합작투자로 설립된 기업의 경영권을 장악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된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국제 라이센싱의 본질이 무형자산 사용권의 이전이며, 직접투자나 경영권 장악 수단과는 다르다는 점을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국제 라이센싱은 특허, 상표, 기술, 노하우 같은 무형자산의 사용권을 해외 기업에 허여하고 로열티를 받는 방식이다.
합작투자는 현지 기업과 공동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직접투자 방식이며, 경영권 문제는 지분 구조와 계약에 의해 결정된다.
경영관리계약은 무형자산 자체의 이전보다 경영 전문서비스 제공이 중심이라는 점에서 라이센싱과 구별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라이센서는 기술이나 상표를 해외에 이전하고 대가로 로열티를 받아 추가 이윤을 기대할 수 있다. 라이센싱의 대표적 동기가 바로 무형자산의 수익화이다.

② O
라이센싱의 핵심은 특허·상표·노하우 같은 무형자산의 사용권 이전이다. 경영관리계약은 경영 전문인력이나 운영 노하우를 서비스 형태로 제공하는 계약이므로 성격이 다르다.

③ O
라이센시는 계약 이행 과정에서 기술지식과 노하우를 학습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라이센서의 잠재적 경쟁자가 될 수 있다. 이는 라이센싱의 대표적 위험요인이다.

④ X
틀린 부분은 "합작투자로 설립된 기업의 경영권을 장악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표현이다. 라이센싱은 보통 투자 없이 무형자산 사용권을 허여하는 방식이지, 합작투자기업의 경영권을 확보하는 수단이 아니다. 올바르게는 합작투자기업의 경영권 문제는 지분 참여나 별도의 경영계약과 관련된다.

오답 포인트

④는 라이센싱, 합작투자, 경영관리계약을 한데 섞어 놓은 선지이다. 국제경영 진입방식을 묻는 문제에서는 무형자산 사용권 이전인지, 자본을 직접 투입하는 투자방식인지, 경영서비스 제공계약인지부터 구분해야 혼동이 줄어든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선지에 경영권, 지분, 합작법인 설립 같은 표현이 나오면 먼저 직접투자 계열인지 본다. 반대로 특허, 상표, 기술, 노하우, 로열티가 핵심이면 라이센싱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라이센싱은 무형자산 사용권과 로열티이고, 합작투자는 자본참여와 경영권 문제이다.

NoteBase

문 14. 생산된 제품에 별다른 브랜드 없이 내용물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제품광고를 하지 않고 평범하게 포장하는 제품 브랜드는?

① National Brand
② Generic Brand
③ Distributor Brand
④ Private Brand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제조업체 브랜드, 유통업체 브랜드와 구별되는 generic brand의 정의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Generic brand는 상표를 거의 쓰지 않고 품목명과 내용물만 단순 표시하는 비광고형 브랜드이다.
National brand는 제조업체가 자기 상표를 붙여 전국 단위로 판매하고 광고하는 브랜드이다.
Distributor brand는 유통업자가 붙이는 브랜드이고, Private brand는 유통업체가 자체 기획·관리하여 자기 점포 중심으로 판매하는 상표이다.

선지별 해설

1번 X: National brand는 제조업체 고유 상표를 붙여 광고와 판촉을 하는 브랜드이다. 틀린 부분은 '별다른 브랜드 없이 내용물만 표시한다'는 표현이다. 올바르게는 '제조업체가 자기 상표를 붙여 전국적으로 판매하는 브랜드'이다.
2번 O: Generic brand는 제품명과 내용물만 단순 표시하고 포장도 평범하며 광고를 거의 하지 않는 형태이다. 발문의 설명과 정확히 일치한다.
3번 X: Distributor brand는 유통업자가 자기 유통망에서 판매하려고 붙이는 브랜드이다. 틀린 부분은 '브랜드 없이 단순 포장한다'는 점이다. 올바르게는 '유통업자가 자기 상표를 붙여 판매하는 브랜드'이다.
4번 X: Private brand는 대형마트나 소매업체가 자체 상표로 기획·판매하는 브랜드이다. 틀린 부분은 '내용물만 표시하는 무브랜드 상품'으로 본 점이다. 올바르게는 '유통업체의 자체 브랜드 상품'이다.

오답 포인트

Distributor brand와 private brand가 모두 유통업체 쪽 브랜드라는 점 때문에 generic brand와 혼동하기 쉽다. 그러나 generic brand의 핵심은 유통주체가 아니라 상표를 거의 쓰지 않고 광고도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브랜드 문제는 먼저 상표를 적극적으로 쓰는지, 누가 상표를 소유하는지, 광고를 하는지를 구분하면 된다. 상표 없이 품목명만 단순 표시하면 generic brand로 판단된다.

암기 포인트

Generic은 무브랜드형 단순표시, National은 제조업체 브랜드, Private는 유통업체 자체상표이다.

NoteBase

문 15. 해외시장 진입방식 중 턴키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외국기업이 투자자 입장에서 공장 또는 설비를 건설한 후, 일정기간 동안 직접 운영함으로써 건설을 위해 투입된 투자비와 적정이익을 회수한 다음, 공장 또는 설비를 현지국 정부나 기업에게 이양하는 방식이다.

② 턴키계약서에는 계약당사자의 의무와 책임, 불가항력조항, 분쟁해결방법 등이 상세하게 명시된다.

③ 공장건설이 완료된 후에도 발주자가 프로젝트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시운전, 경영관리, 종업원 훈련 등 제반 서비스 일체를 포함하는 방식을 턴키 플러스라고 한다.

④ 턴키계약은 현지국 정부에 의한 계약 취소, 강제적 재협상 등 정치적 위험에 노출되기 쉽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턴키계약, 턴키 플러스, BOT 방식의 차이와 턴키계약의 주요 위험을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핵심 개념

턴키계약은 시공업자가 설계·조달·건설을 마친 뒤 발주자가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완성 설비를 인도하는 방식이다. BOT는 민간사업자가 시설을 건설한 뒤 일정 기간 직접 운영하여 투자비를 회수하고 이후 정부나 발주자에게 이양하는 방식이다. 턴키 플러스는 완공 인도에 더해 시운전, 운영지원, 교육까지 포함한 확장형 턴키이다.

선지별 해설

1번: X. 틀린 부분은 "일정기간 동안 직접 운영함으로써 건설을 위해 투입된 투자비와 적정이익을 회수한 다음, 공장 또는 설비를 현지국 정부나 기업에게 이양"이라는 표현이다. 이는 턴키계약이 아니라 BOT 방식의 설명이다. 턴키계약은 완성된 공장이나 설비를 발주자에게 인도하는 데 초점이 있고, 시공업자가 장기간 직접 운영하여 투자비를 회수한 뒤 이양하는 구조는 아니다.
2번: O. 턴키계약은 대규모 플랜트나 설비 프로젝트에 쓰이므로 계약당사자의 의무와 책임, 불가항력 조항, 분쟁해결방법 등을 계약서에 상세히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3번: O. 턴키 플러스는 공장건설 완료 후에도 발주자가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시운전, 경영관리 지원, 종업원 훈련 등 후속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방식이다.
4번: O. 턴키계약은 해외의 대형 프로젝트에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아 현지국 정부의 계약 취소, 조건 변경 요구, 강제적 재협상 같은 정치적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오답 포인트

턴키와 BOT는 모두 공장이나 설비를 건설한다는 점이 같아 보이지만, 누가 운영단계를 맡는지가 결정적 차이이다. 1번은 턴키의 핵심인 완공 후 인도를 BOT의 운영 후 이양 구조와 바꿔 놓은 선지이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완공 직후 발주자에게 넘기면 턴키이고, 시공업자나 민간사업자가 일정 기간 직접 운영하여 투자비를 회수한 뒤 넘기면 BOT로 판단하면 된다. 운영지원이나 교육이 추가되면 턴키 플러스로 정리할 수 있다.

암기 포인트

턴키는 완공 후 인도, BOT는 운영 후 이양, 턴키 플러스는 인도에 운영지원까지 포함한다.

NoteBase

문 16. 해상운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절차의 간소화를 위해서 필수기재사항은 모두 기재되어 있으나, 선화증권의 이면약관이 생략된 것을 약식선화증권이라고 한다.
ㄴ. 이연환급제는 화주가 동맹과 미리 계약을 맺지 않고도 일정기간(4개월) 동안 동맹선을 이용했다는 선적명세서를 제시, 리베이트를 요청하면 운임의 일정률을 환급하는 제도이다.
ㄷ. 선내하역비 부담조건 가운데 FIOST(Free In, Out, Stowage and Trimming)는 선적, 양륙, 적부 및 정리 비용을 모두 화주가 부담하는 조건이다.
ㄹ. 해상화물운송장은 해상운송인이 운송품의 수취를 증명하고 운송 인수조건을 알기 위한 목적으로 송화인에 대해서 발행하는 서류이며, 운송품인도청구권을 상징하는 유가증권적 성격을 지닌다.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해상운송 서류와 운임조건의 핵심 개념을 정확히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약식선화증권은 선화증권의 필수기재사항은 갖추되 이면약관을 생략하고 참조문구로 대신한 선화증권이다.
이연환급제는 화주가 일정 기간 동맹선만 이용하면 환급금을 나중에 지급하는 제도로, 단순 사후 청구 제도와 다르다.
FIOST는 Free In, Out, Stowage and Trimming의 약자로 선적, 양륙, 적부, 정리 비용을 화주 측이 부담하는 조건이다.
해상화물운송장은 운송품 수령과 운송계약 내용을 증명하는 비유통성 서류로서 유가증권은 아니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1번 O: ㄱ은 약식선화증권의 설명으로 맞고, ㄷ도 FIOST의 비용 부담 주체를 정확히 설명하므로 옳은 것만 묶은 선택지이다.
2번 X: ㄱ은 맞지만 ㄹ이 틀리므로 오답이다. 틀린 표현은 "운송품인도청구권을 상징하는 유가증권적 성격"이다. 해상화물운송장은 선화증권과 달리 권리증권성이 없고 단순한 비유통성 운송서류이다.
3번 X: ㄷ은 맞지만 ㄴ이 틀리므로 오답이다. 틀린 표현은 "미리 계약을 맺지 않고도 ... 리베이트를 요청하면"이다. 이연환급제는 동맹선에 대한 계속적 이용을 조건으로 환급금을 후일 지급하는 제도이지, 사후에 선적명세서만 제시하여 임의로 환급을 청구하는 제도가 아니다.
4번 X: ㄴ과 ㄹ이 모두 틀리므로 오답이다. ㄴ은 이연환급제를 단순 사후 환급제처럼 설명한 점이 틀렸고, ㄹ은 해상화물운송장에 유가증권성을 부여한 점이 틀렸다.

오답 포인트

약식선화증권과 해상화물운송장은 모두 운송서류라는 공통점이 있어 혼동하기 쉽다. 그러나 약식선화증권은 선화증권의 한 형태이므로 권리증권성이 유지되고, 해상화물운송장은 비유통성 서류라는 점이 결정적 차이이다. 또한 이연환급제는 환급 시점이 뒤로 밀린다는 뜻이지 아무 조건 없는 사후 할인제도가 아니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운송서류 문제는 먼저 권리증권성 유무를 보고, 운임제도 문제는 환급의 조건과 시점을 구분하면 된다.
비용부담조건은 약어를 풀어 각 비용 항목의 부담 주체를 확인하면 빠르게 판단할 수 있다.

암기 포인트

약식선화증권은 이면약관 생략, 해상화물운송장은 비유통성, FIOST는 선적·양륙·적부·정리 비용을 화주 부담, 이연환급제는 조건 충족 후 나중에 환급이다.

NoteBase

문 17.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CISG)」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계약적합성 판단시기와 관련하여 위험이전 시에 불일치가 존재하면, 불일치 사실이 위험이전 후에 발견된 경우라도 매도인은 책임을 진다.

② 대금지급은 당사자가 약속한 장소가 있으면 그 장소에서, 약속한 장소가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매수인의 영업소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③ 매수인은 당해 사정에 비추어 실행 가능한 짧은 기간 내에 물품을 검사하거나 물품이 검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상대방의 계약위반에 대한 통지의 경우 발신주의 원칙이 적용되어 통지가 지연되거나 도달하지 않는 경우에도 통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정답 2번

쟁점

이 문제는 CISG에서 매도인의 계약적합 책임 시점, 대금지급 장소, 매수인의 검사 의무, 통지의 효력 발생 원칙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용어 풀이

위험이전은 물품의 멸실·훼손 위험이 매도인에서 매수인으로 넘어가는 시점이다.
발신주의는 상당한 방법으로 발송한 통지가 지연되거나 도달하지 않아도 그 통지에 의존할 수 있는 원칙이다.

핵심 구분

물품의 계약적합 여부는 원칙적으로 위험이전 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대금지급 장소는 별도 약정이 없으면 매수인의 영업소가 아니라 매도인의 영업소이다. 매수인은 실행 가능한 짧은 기간 내에 물품을 검사해야 하고, 통지는 원칙적으로 발신주의가 적용된다.

선지별 해설

1번 O: 물품에 위험이전 시 이미 계약부적합이 존재했다면 그 하자가 위험이전 후에 발견되더라도 매도인은 책임을 진다. 발견 시점이 아니라 하자 존재 시점이 기준이다.
2번 X: 약정한 지급 장소가 없을 때 대금은 원칙적으로 매수인의 영업소가 아니라 매도인의 영업소에서 지급한다. 틀린 표현은 '매수인의 영업소'이다. 올바른 표현은 '매도인의 영업소'이다.
3번 O: 매수인은 당해 사정에 비추어 실행 가능한 짧은 기간 내에 물품을 검사하거나 검사되게 하여야 한다. 검사의무의 기준은 '가능한 한 신속한 검사'이다.
4번 O: 상대방의 계약위반과 관련한 통지는 사정에 맞는 방법으로 발송되면 지연되거나 도달하지 않아도 그 통지에 의존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도달주의가 아니라 발신주의가 적용된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대금지급 장소를 매수인 쪽으로 오해하거나, 통지 효력을 도달주의로 착각하면 틀리기 쉽다. 이 문항의 핵심 함정은 2번에서 '매수인의 영업소'를 넣어 원칙의 주체를 뒤바꾼 데 있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CISG 선지는 의무의 주체와 기준 시점을 먼저 대조하면 정리가 된다. 위험이전 시점, 대금지급 장소, 검사 기간, 통지 효력처럼 조문이 정한 기본 원칙을 먼저 확인하면 오답이 빠르게 걸러진다.

암기 포인트

CISG는 하자는 위험이전 시를 기준으로 보고, 대금은 매도인 영업소에서 지급하며, 검사는 가능한 한 신속히 하고, 통지는 발신주의로 처리한다.

NoteBase

문 18. 무역계약의 기본조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명세서매매조건은 주로 곡물이나 과일과 같은 농산물과 광산물 등의 매매에 이용된다.

② 판매적격품질조건은 원목이나 냉동수산물 등과 같이 잠재하자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사용되는 조건으로 매도인은 도착지에서 매수인에게 물품의 판매적격성을 보증한다.

③ 과부족용인조항은 계약 물품의 수량 앞에 ‘about’, ‘approximately’ 등의 표현을 추가하여 수량을 결정하는 조항이다.

④ 선지급은 통상 매수인이 미리 물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주문 또는 계약 시에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현물상환지급(COD)과 서류상환지급(CAD)이 대표적인 선지급방식이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무역계약의 품질조건, 수량조건, 결제조건의 대표 개념을 서로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핵심 개념

명세서매매조건은 견본 제시가 곤란한 기계·설비류를 명세서로 특정하는 품질조건이다.
판매적격품질조건은 외관만으로 하자를 알기 어려운 물품에 대해 도착지에서 판매 가능한 품질을 보증하는 조건이다.
과부족용인조항은 일정 범위의 증감 허용 폭을 정하는 수량조건이고, 'about', 'approximately'는 개산수량표현이다.
선지급은 선적이나 서류 인도 전에 대금을 먼저 지급하는 방식이고, COD·CAD는 인도 또는 서류와 상환하여 지급하는 방식이다.

선지별 해설

1번 X: 곡물·과일·광산물처럼 표준품이나 등급으로 거래되는 1차 산품은 명세서매매조건의 대표 대상이 아니다. 틀린 표현은 '곡물이나 과일과 같은 농산물과 광산물'이다. 올바르게는 선박, 철도차량, 대형기계, 의료기기처럼 견본 제시가 곤란한 물품에 명세서매매조건이 주로 쓰인다.
2번 O: 판매적격품질조건은 원목이나 냉동수산물처럼 외관상 확인되지 않는 잠재하자가 문제 되는 물품에서 사용된다. 매도인이 도착지에서 매수인에게 판매 가능한 품질을 보증한다는 설명이 맞다.
3번 X: 과부족용인조항은 일정한 과부족 허용 범위를 정하는 조항이지, 'about'이나 'approximately'를 붙여 수량을 정하는 조항이 아니다. 틀린 표현은 'about, approximately 등의 표현을 추가하여 수량을 결정하는 조항'이다. 올바르게는 이런 표현은 개산수량표현이고, 과부족용인조항은 보통 일정 비율의 허용 한도를 정한다.
4번 X: 선지급은 계약이나 주문 단계에서 대금을 먼저 지급하는 방식이다. 틀린 표현은 '현물상환지급(COD)과 서류상환지급(CAD)이 대표적인 선지급방식'이다. 올바르게는 COD와 CAD는 물품 인도 또는 서류 인도와 상환하여 지급하는 방식으로 선지급이 아니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품질조건의 여러 유형과 수량·결제조건을 한 문제에 섞어 놓아 용어만 비슷하게 기억하면 틀리기 쉽다. 특히 3번은 과부족용인조항과 개산수량표현을, 4번은 선지급과 COD·CAD를 서로 바꿔 놓은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선지가 품질조건, 수량조건, 결제조건 중 어느 범주인지 나눈 뒤 그 범주의 대표 키워드를 대조하면 된다. 잠재하자와 도착지 보증은 판매적격품질조건, 일정 허용 폭은 과부족용인조항, 대금 선지급과 인도상환지급은 서로 다른 결제방식이다.

암기 포인트

명세서매매는 기계·설비 명세, 판매적격품질조건은 잠재하자 보증, 과부족용인은 허용 폭, COD·CAD는 상환지급이다.

NoteBase

문 19. (가), (나)에 들어갈 분쟁해결조건에 대한 용어를 바르게 짝 지은 것은?

(가)는 계약체결 후 상황의 변화로 원 계약대로의 이행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 계약 내용을 거래 상대방과 재협상할 수 있는 조항이며, (나)는 계약체결 후 물품 가격의 변동에 따라 계약체결 시 합의된 가격을 변경할 수 있는 조항이다.

① (가): Force Majeure Clause, (나): Escalation Clause

② (가): Escalation Clause, (나): Hardship Clause

③ (가): Force Majeure Clause, (나): Hardship Clause

④ (가): Hardship Clause, (나): Escalation Clause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계약체결 후 사정변경에 따른 재협상 조항인 hardship clause와 가격변동 연동 조항인 escalation clause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Hardship Clause는 계약체결 후 사정이 크게 변하여 원래 조건대로의 이행이 현저히 과중하거나 곤란해진 경우 계약조건의 재협상을 요구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다.
Escalation Clause는 계약체결 후 물품가격, 원자재가격, 물가, 환율 등의 변동에 따라 약정 가격을 조정할 수 있게 하는 가격조정 조항이다.
Force Majeure Clause는 천재지변, 전쟁, 금수조치처럼 당사자가 통제할 수 없는 불가항력 사유로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지연된 경우 책임을 면하게 하거나 의무를 조정하는 조항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1번: X. (가)를 Force Majeure Clause로 본 점이 틀리다. 제시문은 이행불능이나 면책이 아니라 사정변경으로 계약내용을 거래상대방과 재협상할 수 있는 경우를 설명하므로 (가)는 Hardship Clause이다. (나)는 물품가격 변동에 따라 합의가격을 변경하는 조항이므로 Escalation Clause라는 점만 맞다.
2번: X. 틀린 표현은 "(가) = Escalation Clause"와 "(나) = Hardship Clause"이다. (가)의 핵심은 가격조정이 아니라 사정변경에 따른 재협상이고, (나)의 핵심은 재협상이 아니라 가격변동 연동이므로 올바르게는 "(가) = Hardship Clause, (나) = Escalation Clause"이다.
3번: X. 틀린 표현은 "(가) = Force Majeure Clause"와 "(나) = Hardship Clause"이다. (가)는 불가항력으로 면책되는 상황이 아니라 이행곤란에 따른 재협상 조항이고, (나)는 일반적 곤란 조항이 아니라 가격변동에 따른 가격조정 조항이다.
4번: O. (가)는 계약체결 후 상황변화로 원계약대로의 이행이 현저히 곤란해져 재협상할 수 있는 조항이므로 Hardship Clause이다. (나)는 계약체결 후 물품가격 변동에 따라 합의가격을 변경할 수 있는 조항이므로 Escalation Clause이다.

오답 포인트

Hardship Clause와 Force Majeure Clause를 모두 사정변경 조항으로 뭉뚱그리면 틀린다. Hardship은 이행이 지나치게 어려워져 재협상으로 가는 조항이고, Force Majeure는 불가항력으로 책임면책이나 이행장애를 다루는 조항이다. 또한 가격변동만을 직접 연결고리로 삼으면 Escalation Clause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문장에 "재협상", "현저히 곤란"이 나오면 Hardship Clause를 먼저 본다. 문장에 "가격 변동에 따라 가격을 변경"이 나오면 Escalation Clause로 판단한다. 천재지변 등 통제불능 사유로 면책이나 이행불능을 다루면 Force Majeure Clause이다.

암기 포인트

Hardship은 사정변경과 재협상, Escalation은 가격연동과 가격조정, Force Majeure는 불가항력과 면책이다.

NoteBase

문 20. 추심에 관한 통일규칙(URC 522)상 제시의 형식(Form of Presentation)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제시은행은 서류가 일람출급이 아닌 기한부지급조건으로 인수를 요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인수를 위한 제시를, 그리고 지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만기일 내에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하여야 한다.

② 추심의뢰은행이 특정 제시은행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추심은행은 자신이 선택한 제시은행을 이용할 수 있다.

③ 서류와 추심지시서는 추심의뢰은행이 추심은행으로 직접 송부하여야 하며, 다른 중계은행을 통하여 송부될 수 없다.

④ 추심이 장래의 확정일출급조건의 환어음을 포함하는 경우 추심지시서에는 상업서류가 지급인에게 인수인도(D/A) 또는 지급인도(D/P) 중 어느 조건으로 인도되어야 하는지를 명시하여야 한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URC 522에서 제시은행, 추심은행, 그리고 기한부 환어음의 서류인도 조건을 어떻게 정하는지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제시는 제시은행이 지급인에게 서류를 제시하는 절차이다. 추심지시서는 인수, 지급, 서류인도 조건을 정하는 문서이며, 제시은행이 따로 지정되지 않으면 추심은행이 제시은행을 선택할 수 있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일람출급이 아닌 추심에서 인수를 요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인수를 위한 제시를 하고, 지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만기일 내에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하여야 한다는 URC 522의 원칙과 맞다.

② O
추심의뢰은행이 특정 제시은행을 지정하지 않으면 추심은행은 자신이 선택한 제시은행을 이용할 수 있다. 추심은행이 직접 제시은행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은행을 제시은행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

③ X
틀린 부분은 '추심의뢰은행이 추심은행으로 직접 송부하여야 하며, 다른 중계은행을 통하여 송부될 수 없다'는 표현이다. 실제로는 서류와 추심지시서가 다른 은행을 거쳐 처리될 수 있으며, URC 522의 추심은행은 추심의뢰은행 이외에 추심 처리에 관여하는 은행을 포괄한다. 올바르게는 추심의뢰은행이 서류와 추심지시서를 추심 처리에 관여하는 은행들을 통하여 송부할 수 있다고 본다.

④ O
추심이 장래의 확정일출급조건의 환어음을 포함하면 추심지시서에는 상업서류를 지급인에게 인수인도(D/A)할 것인지 지급인도(D/P)할 것인지를 명시하여야 한다. 기한부 환어음에서 서류인도 조건을 분명히 적는다는 취지와 맞다.

오답 포인트

③은 '직접 송부'를 절대 규칙처럼 바꾸어 중계은행 개입 가능성을 지워 버린 것이 함정이다. ④도 기한부 환어음이면 무조건 D/A라고 단정하면 틀리고, 핵심은 어떤 조건으로 서류를 인도할지를 추심지시서에 명시한다는 점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URC 522 문제는 먼저 당사자 정의와 지시 문구를 확인하면 된다. '지체 없이', '자신이 선택한 제시은행', 'D/A 또는 D/P를 명시'처럼 규정의 핵심 표현을 기준으로 선지를 대조하면 정오가 갈린다.

암기 포인트

제시는 제시은행이 하고, 제시은행 지정이 없으면 추심은행이 선택하며, 기한부 환어음의 서류인도 조건은 D/A 또는 D/P를 적는다.

NoteBase

문 21. 해외직접투자이론 중 내부화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내부화는 시장실패로 인해 시장기능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없는 경우, 시장에서 이루어지던 거래를 기업 내부로 대체하는 것을 의미한다.

② 내부화의 개념은 코즈(Coase)의 연구로부터 시작되어 러그만(Rugman)이 더욱 발전시켜 해외직접투자를 설명하는 일반 이론으로 계승되었다.

③ 외부시장 투자에 대한 고비용과 비효율적인 불완전성이 공존할 때 적용된다.

④ 기업이 해외시장에 진출하는 경우 수많은 국가 중에서 특정 국가에 진출하는 이유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있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내부화이론이 설명하는 범위와 입지선택이론이 설명하는 범위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내부화이론은 시장거래에 거래비용과 시장불완전성이 크면 그 거래를 기업 내부로 흡수하여 해외직접투자를 설명하는 이론이다. 키워드는 시장실패, 거래비용, 내부거래이다.
입지선택 설명은 왜 하필 그 국가를 선택하는가를 다루는 축이다. 키워드는 특정국가 선택, 입지우위이다.
정리하면 내부화이론은 시장을 내부조직으로 대체하는 이유에 강하고, 특정 국가 선택 자체를 충분히 설명하는 이론은 아니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시장기능이 거래비용, 정보비대칭, 계약불완전성 등으로 원활하지 않으면 외부시장에서 하던 거래를 기업 내부조직으로 대체한다는 설명이므로 맞다.

② O
내부화의 출발점은 코즈의 거래비용 관점이며, 이를 바탕으로 해외직접투자 설명으로 발전한 흐름이 내부화이론이다. 교재에 따라 버클리·캐슨이나 러그먼이 함께 언급되지만, 코즈의 연구에서 출발해 일반 이론으로 계승되었다는 진술 자체는 맞다.

③ O
내부화이론은 외부시장에서 거래할 때 비용이 높고 시장이 불완전할수록 기업이 그 활동을 내부화한다고 본다. 고비용과 불완전성이 공존할 때 적용된다는 진술이므로 맞다.

④ X
틀린 부분은 "수많은 국가 중에서 특정 국가에 진출하는 이유에 대해 충분히 설명"한다는 표현이다.
내부화이론은 왜 시장거래 대신 기업 내부거래와 해외직접투자가 선택되는지를 설명하지만, 어느 국가를 택하는지는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
올바르게는 특정 국가 선택은 입지우위나 절충이론이 더 잘 설명한다고 본다.

오답 포인트

해외직접투자이론이라는 큰 범주만 보고 내부화이론이 해외진출의 모든 단계, 특히 국가선택까지 설명한다고 확장하면 ④에 걸린다. 내부화이론의 핵심은 시장 대신 내부조직을 택하는 이유라는 점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선지가 왜 그 나라를 선택했는가를 묻으면 입지우위 설명인지 먼저 본다. 반대로 왜 시장거래 대신 기업 내부에서 처리하는가를 묻으면 내부화이론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내부화이론은 시장실패로 인한 내부화를 설명하고, 특정 국가 선택은 입지우위가 설명한다.

NoteBase

문 22. (가) ~ (다)에 들어갈 해상보험에 대한 용어를 바르게 짝 지은 것은?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피보험자가 보험자로부터 보상받는 손해보상액은 (가)이며,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자가 보상하는 최고 한도액은 (나)이다. 또한 전액보험(full insurance)의 경우 (나)는 (다)와/과 일치한다.

① (가): Claim Amount, (나): Amount Insured, (다): Insurable Value
② (가): Amount Insured, (나): Claim Amount, (다): Insurance Premium
③ (가): Claim Amount, (나): Amount Insured, (다): Insurance Premium
④ (가): Amount Insured, (나): Claim Amount, (다): Insurable Value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해상보험의 기본 용어인 Claim Amount, Amount Insured, Insurable Value의 의미와 상호 관계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Claim Amount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뒤 피보험자가 실제로 지급받는 손해보상액이다.
Amount Insured는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자의 보상 최고 한도액이다.
Insurable Value는 보험의 목적물에 대해 경제적으로 평가한 보험가액이며, 전액보험에서는 Amount Insured가 이 보험가액과 일치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Claim Amount는 실제 지급되는 손해보상액이고 Amount Insured는 보상의 한도액이며, full insurance에서는 Amount Insured와 Insurable Value가 같으므로 옳다.
② X 틀린 부분은 '(가) Amount Insured', '(나) Claim Amount', '(다) Insurance Premium'이다. 실제로는 (가)는 Claim Amount이고 (나)는 Amount Insured이며, Insurance Premium은 보험료이므로 보험가액과 일치할 수 없다.
③ X 틀린 부분은 '(다) Insurance Premium'이다. (가)와 (나)의 배치는 맞지만, full insurance에서 Amount Insured와 같아지는 것은 보험료가 아니라 Insurable Value이다.
④ X 틀린 부분은 '(가) Amount Insured'와 '(나) Claim Amount'이다. 실제로는 손해보상액이 Claim Amount이고, 보험자의 최고 보상한도액이 Amount Insured이다. (다)의 Insurable Value 자체는 전액보험의 설명과 맞지만 앞의 두 용어 대응이 틀렸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Claim Amount와 Amount Insured를 둘 다 금액 개념으로만 보고 뒤바꾸기 쉽다. 또한 full insurance를 보면 보험료와 관련된 말로 착각하기 쉬우나, 일치하는 대상은 보험료가 아니라 보험가액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실제 지급된 돈인지, 계약상 상한선인지, 목적물의 평가액인지를 먼저 구분하면 된다. 지급 결과이면 Claim Amount, 한도이면 Amount Insured, 기준 가치이면 Insurable Value로 판단된다.

암기 포인트

Claim Amount는 실제 보상액, Amount Insured는 보상한도, full insurance에서는 Amount Insured = Insurable Value이다.

NoteBase

문 23. 경제통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경제통합의 실례로는 EU, MERCOSUR, USMCA, ASEAN, CPTPP, RCEP 등이 있다.

② 바이너(Viner)는 관세동맹에 따라 나타나는 경제적 효과를 무역창출효과와 무역전환효과로 설명하고 있다.

③ 관세동맹을 체결하는 국가의 후생이 증가하기 위해서는 무역전환효과가 무역창출효과보다 커야 한다.

④ 경제통합의 동태적 효과로는 역내시장이 확대되면 역내경제에 규모의 경제가 나타나는 것이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경제통합의 유형과 정태적·동태적 효과를 구분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경제통합은 국가 간 무역장벽을 낮추거나 제거하여 시장을 하나로 묶는 과정이다. 정태적 효과는 통합 직후의 자원배분 변화로 나타나는 무역창출효과와 무역전환효과이고, 동태적 효과는 시장 확대에 따른 규모의 경제, 경쟁 촉진, 투자 확대처럼 시간이 지나며 나타나는 효과이다.

선지별 해설

1번: O. EU, MERCOSUR, USMCA, ASEAN, CPTPP, RCEP는 모두 국가 간 경제협력을 제도화한 경제통합의 사례로 볼 수 있다. 통합 수준은 서로 다르지만 자유무역협정, 관세동맹, 공동시장 등 경제통합의 범주에 들어간다.

2번: O. Viner는 관세동맹의 정태적 효과를 무역창출효과와 무역전환효과로 설명한다. 무역창출효과는 비효율적인 국내생산이 더 효율적인 회원국 생산으로 대체되는 효과이고, 무역전환효과는 더 효율적인 비회원국 대신 회원국으로 수입이 바뀌는 효과이다.

3번: X. 틀린 부분은 "무역전환효과가 무역창출효과보다 커야 한다"는 표현이다. 관세동맹으로 후생이 증가하려면 일반적으로 무역창출효과가 무역전환효과보다 커야 한다.

4번: O. 경제통합의 동태적 효과에는 시장 확대에 따른 규모의 경제 실현이 포함된다. 역내시장이 커지면 기업이 더 큰 생산규모를 활용할 수 있어 평균비용이 낮아질 수 있다.

오답 포인트

3번은 무역창출효과와 무역전환효과의 방향을 뒤집어 놓은 함정이다. 관세동맹의 후생 판단에서는 창출이 전환보다 큰지가 핵심인데, 두 효과의 이름만 외우고 방향을 놓치면 쉽게 틀린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경제통합 문제는 먼저 통합의 유형인지 효과인지부터 구분한다. 효과를 묻는다면 정태적 효과는 무역창출·무역전환, 동태적 효과는 규모의 경제·경쟁 촉진·투자 확대처럼 시간 경과에 따라 나타나는 효과로 나누어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정태적 효과는 무역창출과 무역전환, 동태적 효과는 시장 확대와 규모의 경제이다.

NoteBase

문 24. WTO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무역정책검토기구(TPRB)를 설치하여 회원국들의 무역정책 관련 제도를 정기적으로 평가함으로써 투명성을 제고하고 있다.

② 각료회의는 무역분야별 대표로 구성된 심의기구로서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된다.

③ 분쟁해결기구(DSB)의 결정사항이 용이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교차보복(Cross-Sector Retaliation)을 허용하고 있다.

④ 일반이사회 산하에는 상품교역이사회, 서비스교역이사회, 무역관련지적재산권이사회가 있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WTO의 주요 기구인 각료회의, 일반이사회, TPRB, DSB의 기능과 위상을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핵심 개념

각료회의는 WTO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모든 회원국 대표가 참여하며 원칙적으로 2년에 한 번 이상 개최된다.
일반이사회는 일상적 운영을 담당하는 상설기구이며 필요에 따라 DSB와 TPRB의 역할도 수행한다.
DSB의 보복조치는 상대국의 이행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이며, 같은 분야 보복이 어렵거나 비효율적이면 교차보복도 허용될 수 있다.

선지별 해설

1번 O: TPRB는 회원국의 무역정책을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제도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기능을 한다.
2번 X: 틀린 부분은 '무역분야별 대표로 구성된 심의기구'와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된다'는 표현이다.
각료회의는 WTO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모든 회원국 대표가 참여하고, 상설 심의기구가 아니라 최소 2년에 한 번 열리는 회의체이다.
3번 O: DSB는 분쟁 해결 결정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양허정지나 보복을 허용하며, 같은 분야 보복이 실효적이지 않으면 교차보복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4번 O: 일반이사회 산하의 3대 이사회는 상품교역이사회, 서비스교역이사회, 무역관련지적재산권이사회로 구성된다.

오답 포인트

각료회의와 일반이사회를 모두 WTO의 회의기구 정도로만 기억하면 틀리기 쉽다. 각료회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이지만 상설 운영기구가 아니고, 일반이사회가 상설적으로 운영되면서 산하 이사회를 거느린다는 점이 함정이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WTO 기구 문제는 최고 의사결정기구인지, 상설 운영기구인지, 분쟁해결 기능인지, 무역정책 검토 기능인지를 먼저 나누어 판단하면 된다. 개최 주기와 상설성까지 함께 확인하면 각료회의와 일반이사회가 쉽게 구별된다.

암기 포인트

각료회의는 최고 의사결정, 일반이사회는 상설 운영, TPRB는 정책검토, DSB는 분쟁해결이다.

NoteBase

문 25. 프라할라드(Prahalad)와 도즈(Doz)의 통합-대응 모델에 대한 설명이다. 빈칸에 들어갈 용어는?

_____은 글로벌통합압력은 물론 현지시장에 대한 적응압력도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요구될 때 나타나는 기업의 대응유형이다. 이 유형에서 국제기업은 자회사들의 자율적인 독자경영을 허용하면서 본사는 각 지역의 자회사 간의 이해를 통합-조정하게 된다.

① 다중심전략(Multifocal Strategy)
② 보호시장침투전략(Protected Market Strategy)
③ 지역별대응전략(Local Responsiveness Strategy)
④ 순수글로벌전략(Pure Global Strategy)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프라할라드와 도즈의 통합-대응 모형에서 글로벌 통합압력과 현지시장 적응압력이 모두 높은 경우의 대응유형을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다중심전략은 글로벌 통합압력과 현지시장 적응압력이 모두 높을 때 본사가 세계 차원의 조정을 하면서도 각국 자회사에 상당한 자율성을 부여하는 유형이다.
보호시장침투전략은 두 압력이 모두 낮아 본사의 강한 통합조정이나 현지 맞춤 요구가 모두 크지 않은 유형이다.
지역별대응전략은 현지시장 적응압력은 높지만 글로벌 통합압력은 낮아 국가별 맞춤 대응이 중심인 유형이다.
순수글로벌전략은 글로벌 통합압력은 높지만 현지시장 적응압력은 낮아 본사 주도의 표준화가 중심인 유형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문장에 제시된 핵심 단서는 '글로벌통합압력'과 '현지시장에 대한 적응압력'이 모두 높다는 점, 그리고 '자회사들의 자율적 독자경영'과 '본사의 통합·조정'이 함께 나타난다는 점이다. 이는 두 압력을 동시에 처리하는 다중심전략의 특징과 일치한다.

② X
틀린 부분은 '보호시장침투전략'이다. 보호시장침투전략은 본사의 강한 글로벌 통합도, 현지 적응 요구도 모두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상황에 가깝다. 올바르게는 두 압력이 모두 높고 본사가 자회사 간 이해를 통합·조정하는 유형은 다중심전략이다.

③ X
틀린 부분은 '지역별대응전략'이다. 지역별대응전략은 현지 적응에는 민감하지만 글로벌 차원의 강한 통합조정은 약한 유형이다. 올바르게는 현지 적응과 글로벌 통합을 동시에 요구받는 경우는 다중심전략이다.

④ X
틀린 부분은 '순수글로벌전략'이다. 순수글로벌전략은 전 세계 표준화와 본사 중심 통합은 강하지만 현지 자회사에 폭넓은 자율성을 부여하는 유형은 아니다. 올바르게는 자회사 자율성과 본사 통합조정이 함께 나타나는 경우는 다중심전략이다.

오답 포인트

수험생은 '현지시장에 대한 적응압력'이라는 표현만 보고 ③ 지역별대응전략으로 오인하기 쉽다. 그러나 이 문항의 결정적 단서는 현지 적응만이 아니라 글로벌 통합압력도 함께 높고, 본사가 자회사 간 이해를 통합·조정한다는 점이다. 두 축이 모두 높으면 다중심전략으로 판단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통합-대응 모형 문제는 먼저 두 축을 나누어 본다. 현지 적응만 강조되면 지역별대응전략, 글로벌 표준화만 강조되면 순수글로벌전략, 두 압력이 모두 높아 본사 조정과 자회사 자율이 함께 나오면 다중심전략, 두 압력이 모두 낮으면 보호시장침투전략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양압력 모두 높음은 다중심전략, 현지압력만 높음은 지역별대응전략, 글로벌압력만 높음은 순수글로벌전략, 양압력 모두 낮음은 보호시장침투전략이다.

NoteBase